

의안번호	제 199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심기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#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심기보, 박상돈, 박형용,  
육미선, 이상욱, 최경천,  
이상식

## 1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이동 (안 제1, 2조)
- 나. 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 표기 사용 (안 제2, 3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나. 협의 :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
- 다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 라 한다)” 를  
“충청북도 고문변호사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” 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 
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” 로, “고문변호사” 를 “충  
청북도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업무)” 를 “(업무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 
“도” 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“라 한다)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 고문변호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촉) ① <u>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위촉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----- 충청북도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“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업무) ① <u>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도가 위임하는 쟁송사건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업무 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</u> 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